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제 목 운수종사자의 운전중 영상물 시청 금지 등 사고예방 안내

1.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-2051호(2024.4.2.)와 관련입니다.

2. 최근 택시기사 운전 중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등 위험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고, 전세버스 현장체험 운행차량의 '전방주시 태만'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중·경상자가 발생('24.04.06)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(스마트폰, 테블릿 등)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이 개정되어 '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바라며,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한 졸음운전 및 대열운전 금지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차량 정비점검 강화, 준법운행 등 행락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불 임 : 국토교통부 공문 1부.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
이사장 오 성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4- 73호 (2024.04.11) 접수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)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